
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

순 서

- 제1절 통 칙
-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
-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
-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
-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
-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
-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
-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
-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
-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

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재난복구 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(일반회계 기준)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·군과 인접 시·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.

- 가)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
 - 나)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
- 6)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.
- 가) 실적(시공실적, 용역수행실적, 납품실적) 단, 특수한 기술(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)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.
 - 나) 규격
 - 다) 재질·품질
 - 라)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
 - 마) 장비·시설 보유상황
 - 바) 시공여유율(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)
 - 사) 제조공장·처리장
- 아)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- 7) “3)·4)·5)”의 각 호는 “6)”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.
- 8)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“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”, “제8장 입찰유의서”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”, 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” 등을 준용한다. 다만, 견적서 제출자가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·신고·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.
- 9)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.745%, 용역·물품은 88%(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용역·물품은

90%) 이상으로 제출한 자(다만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% 이상으로 제출한 자)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<별표 1>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.

- 10) 국내·외 수학여행·수련활동 등(항공, 버스임차, 숙식 포함 가능)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.
- 11) 계약담당자는 <배제사유>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<별지 1>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12)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(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)에는 사업기간,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.
- 13)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·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(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)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14)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.
- 15)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.
- 16)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(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.)

2.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

가. 대상

구분	유형	주요 내용				견적서 제출방법
		종합공사	전문공사	전기 등 그밖의공사	용역·물품 기타	